

등록번호	공동체협치과 -14403
등록일자	2021. 11. 19
결재일자	2021. 11. 19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주민공동 체담당	공동체협 치과장	자치행정국 장	미래기획실 장	구청장
광재식	류현자	이석원	임경환	오진종	2021. 11. 19. 이재현
협조자					

- 소통하며 상생하는 '협치 서구' 실현을 위한 -
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추진계획(안)



인천광역시서구 [공동체협치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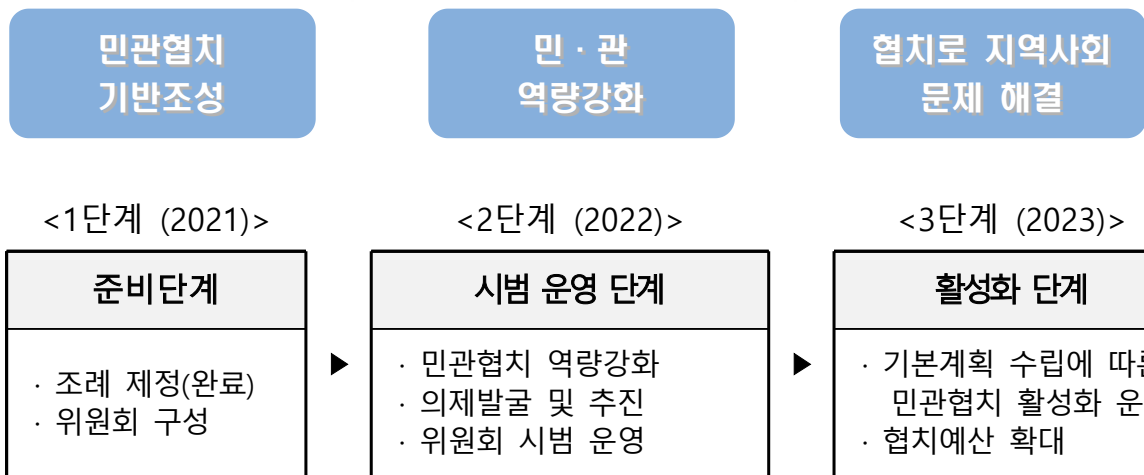


□ 추진목적

-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치를 통한 해소 필요
-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 도모를 위한 기반 마련
- 협치를 위한 민·관 상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

□ 추진방향

소통하며 상생하는 '협치 서구' 실현



□ 추진계획 및 일정

사업명	추진일정														
	2021년			2022년											
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
협치 기본 조례 제정 (완료)															
민관협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															
민관협치 의제발굴 및 사업화															
협치 지원 인력 운영															
민관협치 역량강화(교육 등)															
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														
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															

- 소통하며 상생하는 '협치 서구' 실현을 위한 -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추진계획(안)

-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조성
- 민·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, 평가까지 하는 협치문화 정착과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I 추진 배경 및 목적

-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치를 통한 해소 필요
 - 고령화, 실업, 도시재생, 환경, 에너지 등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 문제 증가
 - 구민이 행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의무이자 구민의 권리이며, 이에 따른 민·관이 함께 상호 현안에 대해 공론하고, 사업을 실행·평가하는 민관협치가 중요함.
-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 도모를 위한 기반 마련
 -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, 조직적 기반 필요
- 협치를 위한 민·관 상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
 - 구민과 행정의 협치에 대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협치 필요성 및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
- 지역협치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동참하면서 서구형 협치 체계 구축

민관협치 (協 화합할 협 治 다스릴 치)

- 주민이 정책의 입안·시행·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
-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, 평가하는 규정 운영방식 및 체계

II 추진근거

○ 「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」 제정

- 조 례 명: 「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」 「붙임」 참조
- 제 정 일: '21. 10. 21. (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)
- 공 포 일: '21. 11. 08.
- 제정목적: 최근 행정환경 변화 등 민관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민관 협치 추진을 위해 법적·제도적 근거 마련

< 조례 주요내용 >

□ 총칙 (제1조~제6조)

- 목적, 정의, 기본원칙, 구민의 권리와 의무,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

□ 서구 민관협치위원회 (제7조~제16조)

- 기능: 심의·조정 기능,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
- 구성: 위원장2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임기 2년)
※ 공동위원장(구청장, 위원 중 호선), 부위원장(위원중 호선), 간사1명(담당)

□ 민관협치 활성화 등 (제17조~제22조)

- 민관협치 기본계획: 3년마다 수립(정책 기본방향,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, 자원 조달방안 등)
- 민관협치 실행계획: 매년 수립
- 민관협치 협약,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,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, 포상 등

Ⅲ 추진 방향

소통하며 상생하는 “협치서구” 실현

민관협치
기반조성

민·관
역량강화

협치로 지역사회
문제 해결

- 민·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·집행·평가하는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마련
 -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제도적 기반 조성
-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함께하는 「민관협치 위원회」 운영
 - 협치 협의·조정 기구로서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 역할 수행
 -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역량 있는 위원 선정
- 협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실질적 협치 역량 강화
 - 협치에 대한 경험 부족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추진
 - 협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구민 홍보 실시
- 지속가능한 협치 제도 구축 마련
 - 협치 예산 지원 및 확대
 -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지원관 운영
- 단계별 추진

<1단계 (2021)>

준비단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례 제정(완료) · 위원회 구성

<2단계 (2022)>

시범 운영 단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관협치 역량강화 · 의제발굴 및 추진 · 위원회 시범 운영

<3단계 (2023)>

활성화 단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민관협치 활성화 운영 · 협치예산 확대

IV

세부 추진계획

1 민관 협치위원회 구성

- 위원회명: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위원회
- 추진시기: 2021. 11~12월 중 (※ 위원회 구성 계획 별도 수립 예정)
- 구성방법: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
구청장이 위촉
 - 시민사회단체, 직능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
 - 동장이 추천하는 구민
 -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구성인원: 30명 이내 (공동대표: 구청장, 위촉직 위원중 선출)
 - 당연직 위원 (3명): 구청장, 미래기획실장, 자치행정국장
 - 위촉직 위원(27명): 구의회·시민사회단체·직능단체·공공기관·동장 추천자 등
- 임 기: 2년 (1회 연임 가능)
- 회의운영: 정기회, 임시회 구분 운영
 - 정기회: 연 2회
 - 임시회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소집
- 기 능: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·조정
 -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·시행·평가·환류에 관한 사항
 -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2 민관협치 의제 발굴 및 사업화

○ 추진방향

-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 및 정책실행 과정에 공무원 및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
- 행정기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숙의·공론 과정을 통한 민·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

○ 추진개요

- 추진시기: 2022. 수시
- 발굴과제: 주민의 참여로 민관 공동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한 의제
- 발굴방법: 주민들의 온라인 제안 및 부서 협조 등을 통한 의제 접수
- 추진절차



○ 의제 선정기준

사업의 타당성	
공익성	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?
시급성(중요성)	다른 것보다 우선 추진해야 하는가?
수혜대상	사업 실행 시 다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?
목표 달성도	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인가?
효과성	주민의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나?
협치의 효과성	
협치성	민관협력의 필요성 및 민관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?
협치파트너 간 사업수행 의지	민관이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, 실행 및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?

※ 제외사업: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, 특정인에 대한 특혜, 선심성 사업, 단문 민원 해결성 사업, 지방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항

3 민관협치 역량강화

○ 추진방향

- 민관협치에 대한 행정기관 및 구민의 이해와 운영방향 공유
-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협치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

○ 추진내용

가. 민관협치 홍보책자 발간

- 시 기: 2022. 3월
- 내 용: 민관협치 개념 정리 등 홍보책자 발간을 통하여
민관협치 이해 도모

나. 역량강화 교육

- 시 기: 2022. 4월, 10월
- 대 상: 협치위원, 구민 및 공무원
- 방 법: 자체 교육 또는 교육전문기관 활용 (온라인 강의 병행)
- 내 용
 - 민관협치 기본개념 및 필요성 이해
 - 공무원과 구민이 갖추어야 할 협치 마인드 및 역할
 - 국내·외 민관협치 적용 사례 공유

다. 민관협치 워크숍 추진

- 시 기: 2022. 9월
- 대 상: 협치위원, 민관협치 사업 관계 공무원 등
- 방 법: 민관협치 우수기관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등

라. 협치 사례 조사 연구

- 시 기: 수 시
- 방 법: 민관협치 우수 사례 발굴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
- 내 용: 사례 발굴을 위한 현지 조사

○ 소요예산: 12,000천원

- 홍보책자 발간, 역량강화 교육, 워크숍 등

4 협치 지원 인력 운영

○ 채용개요

- 채용분야: 협치지원관
- 채용인원: 1명
- 채용시기: 22년 3월 (채용기간: 1년, 필요시 연장)
- 임용등급: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
- 채용방법: 공개채용

○ 역할

-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지원
- 협치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지원
-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
- 국내·외 민관협치 적용 사례 공유

○ 자격요건

-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직무분야: 마을공동체, 주민자치, 지역복지, 사회적경제, 혁신교육, 도시재생 등
민관협치(협력) 또는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

○ 인천 타구사례

- 미추홀구: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(20. 4월 채용)
- 계 양 구: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(20. 5월 채용)

○ 소요예산: 57,140천원

5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

○ 추진근거: 「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」 제17조

제17조(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)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
2.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
4.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(이하 “연도별 실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○ 추진개요

- 용역명: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
- 용역착수: 2022. 7월
- 용역기간: 착수일로부터 3개월
- 계약방식: 협상에 의한 계약

○ 용역내용

-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
-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
- 지역협치 기반조성 방안
-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등

○ 기대효과

- 민관협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비전 및 방향 설정
- 서구형 민관협치 실천과제 도출, 추진체계 및 실행계획 수립

○ 소요예산: 약 30,000천원 (22년도 추경 반영)

6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

- 수립시기: 2022. 12월 중
- 수립목적: 구정 핵심영역에 대하여 민관 공동의 정책의제 설정 및 사업기획, 예산 수립, 평가를 수행하도록 포괄적 방향 제시
- 주요내용
 - 서구 민관협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
 - 민관협치 기본 조직 마련 및 기반 구성
 - 협치의제사업 설계 및 추진계획
 - 민·관 협치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방안 마련

V 행정사항

- 향후 추진일정
 - 민관협치 위원회 구성 : 2021. 11. ~ 12.
 - 협치지원 인력 채용 : 2022. 1. ~ 3.
 - 민관협치 역량강화 (교육 등) : 2022. 3. ~ 10.
 -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: 2022. 7. ~ 9.
 -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: 2022. 10. ~ 12.

○ 추진계획 진행 흐름도(안)

사업명	추진일정														
	2021년			2022년											
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
협치 기본 조례 제정 (완료)	■														
민관협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민관협치 의제발굴 및 사업화			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협치 지원 인력 운영			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민관협치 역량강화(교육 등)			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										■	■	■	■	■	■
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														■	■

○ 예산계획

지출항목	산출근거	금액(천원)	비고
총 계		114,256	시 75,000천원 구 39,256천원
인건비	소 계	57,140	
	○ 협치지원관(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) · 연 봉 46,740,000원 · 수 당 10,400,000원	57,140	시 47,884천원 구 9,256천원 (’22. 추경반영)
사무관리비	소 계	15,116	
	○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· 70,000원*25명*5회	8,750	전액시비
	○ 회의 운영비 · 2,366,000원*1식	2,366	
	○ 민관협치 홍보 책자 제작 · 4,000,000원*1식	4,000	
행사운영비	소 계	12,000	
	○ 민관협치 교육 및 워크숍 · 12,000,000원*1식	12,000	전액시비
연구용역비	소 계	30,000	
	○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· 30,000,000원*1식	30,000	구비 (’22.추경반영)

※ 협치활성화 관련 시 재정지원 (22년도 본예산 각 구별 75,000천원)

[2022년 기초 지방정부의 협치체계 구축지원 관련 시비보조 가내시 - 협치인권담당관-9646(2021.10.06.)]

○ 협조사항

- 구정현안, 사회적 이슈 등 의제 수시 발굴 (전부서)
-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협조 (기획예산담당관)
- 협치지원 인력 조직 증원 관련 협조 (기획예산담당관)

붙임

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

(제정) 2021-11-08 조례 제 1907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관협치”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·평가하는 구정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.

1. 민관협치는 참여 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.
2. 민관협치의 모든 참여 주체는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.
3.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.

제4조(구민의 권리와 의무)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(이하 “구민” 이라 한다)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·집행·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,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,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위원회

제7조(설치)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민관협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·평가·환류에 관한 사항
 2.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,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(이하 “공동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「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제8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1. 시민사회단체, 직능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2.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
 - 3. 동장이 추천하는 구민
 - 4.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2.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- 4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- 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.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
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- 1. 해당 안건이 본인,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
- 2.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.
- ④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로써 정한다.

제15조(의견 청취 등) ① 위원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

제17조(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)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
2.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
4.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(이하 "연도별 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제18조(민관협치 협약) ① 구청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제19조(제도개선 및 정책평가)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민관협치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,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20조(민관협치 관련 지원)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·단체·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1조(교육·홍보 등)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(포상)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구민에게 「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